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298 절도
피 고 인 김중식 (000000-00000000), 농업
주거 진주시 집현면 00길 00
등록기준지 진주시 신안동 0-00
검 사 이○○(기소), 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진○○
판 결 선 고 2022. 3. 3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11:25경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697 집현면사무소 입구 발열
검사대에서 피해자 성○○가 출입자 안내를 하면서 놓아둔 시가 1,39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
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서(CD 첨부)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휴대전화를 들고 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집현면사무소 입구에 있는 발열검사대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자신이 들고 온 손가방을 발열검사대 책상에 내려놓고 출입자 명부를 작성한 다음 자신이 들고 온 손가방과 성○○의 휴대전화를 함께 들고 갔는데, 피고인이 성○○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착각하여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인다.

② 피고인을 출입자 명부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였고, 수사기관도 수사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기재된 휴대전화 번호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피고인은 성○○의 휴대전화를 들고 집현면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10여분 동안 업무를 보았는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면 집현면사무소에서 머물며 업무를 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같은 마을 주민인 박○○에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지고 왔는데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보여주었고, 박○○에게 휴대전화 주인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었다.

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잘못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도 경찰서에 신고하

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주인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돌려주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실제로 성○○는 휴대전화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몇 차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그날 점심시간 무렵에 없어진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고 다른 공기계에 없어진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사용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줄 수 없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 _____